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인덱스플러스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모투자신탁 추가
-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신설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 이상 투자문구 삭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 10. 20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4항 <추가>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하나UBS First Class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가. 하나UBS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수준(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하나UBS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수준 다.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항의 투자비율은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1. 하나UBS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하나UBS First Class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수준(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하나UBS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수준 3.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있다.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현행과 동일)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 39 조의 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지급)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 중 50%(연 1000분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 추가>

2)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50% 수준
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50% 수준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추가>

3) 비교지수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성장형 모펀드와 KOSPI20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로서 (생략)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명	투자목적	
하나 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
	투자목적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 추구합니다.

2)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50% 수준
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50% 수준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 대상	투자 비율
주식	60%이상
채권	40%이하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어음	40%이하

3) 비교지수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펀드와 KOSPI20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로서 (현행과 동일)

<table>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
2.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90% 이상 투자하여 국내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td></tr>
<tr><td>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td></tr>
</table>

[모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
<추가>
</td>
<td>
2.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국내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td></tr>
<tr><td>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td></tr>
</table>

[모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
<table>
<tr><th>모투자신탁</th><th>투자전략</th></tr>
<tr><td>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 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추구</td></tr>
</table>
</td>
</tr>
</table>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 유망종목 발굴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투자신탁 추가></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BJ948)</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투자신탁 추가></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BJ948)</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0월 20일
1) 모투자신탁 추가(하나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신설
3)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 이상 투자문구 삭제)
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다.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td></tr><tr><td>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td></tr></table>[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추가)</td><td>다.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td></tr><tr><td>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td></tr></table>[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tr><td>하나 UBS</td><td>주요 투자</td><td>국내주식 60% 이상, 채권 40%</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 rowspan="3">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대상</td><td>이하</td></tr>
<tr><td>투자목적</td><td>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 추구합니다.</td></tr>
<tr><td>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td><td>-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td></tr>
</table>
</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함)</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td></tr>
</table>
</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내용</th></tr>
<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함)</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 호 내지 2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 1호 내지 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2) 투자제한
<모투자신탁 추가></td><td><table><tr><td>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td></tr></table>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2) 투자제한
[별첨 1]</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td></tr><tr><td>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td></tr></table>
(3) 비교지수(Benchmark)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성장형 모펀드와 KOSPI20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모펀드에 투자하는</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td></tr><tr><td>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td></tr></table>
(3) 비교지수(Benchmark)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펀드와 KOSPI200지수를 추종하는</td></tr>
</table>

	자펀드로서 (생략)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 추가>	인덱스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로서 (현행과 동일)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운용전략 □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추구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2)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수익률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수익률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펀드매니저와의 면담 및 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운용현황 및 전망 파악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별첨1>

(1) 투자대상

- 하나UBS 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취득 시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 하나UBS 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한도초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 제5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태극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모투자신탁 추가
-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신설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 이상 투자 문구 삭제)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 10.20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4항 3. 하나UBS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유망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추가>	제4항 <삭제> 4. 하나UBS FirstClass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가. 성장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수준(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삭제> 1. 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수준(수준이라 함은 ±10%

	나. 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수준 다. 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0% 라. 배당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수준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항의 투자비율은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다.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현행과 동일) <삭제> 3. (현행과 동일) 4.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현행과 동일)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 39 조의 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지급)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 중 50%(연 1000분의 0.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

		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 추가>

(2)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
</table>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추가>

(3) 비교지수
</td><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투자목적</th></tr>
<tr><td rowspan="2">하나 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주요투자대상</td><td>국내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td></tr>
<tr><td>투자목적</td><td>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 추구합니다.</td></tr>
</table>
(2)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
</table>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주식</td><td>60%이상</td></tr>
<tr><td>채권</td><td>40%이하</td></tr>
<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이하</td></tr>
<tr><td>어음</td><td>40%이하</td></tr>
</table>
(3) 비교지수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td></tr>
</table>

<table>
<tr><td></td><td>※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성장모투자신탁,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블루칩모투자신탁,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배당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유망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유망중소형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 (KOSPI*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생략)</td><td>상장된 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펀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블루칩모투자신탁,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배당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 (KOSPI*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과 동일)</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2. 투자전략
[모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table>
[모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
<추가></td><td>2. 투자전략
[모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table>
[모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
<table><tr><th>모투자신탁</th><th>투자전략</th></tr><tr><td>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td></tr></table></td></tr>
</table>

			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추구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 유망종목 발굴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투자신탁 추가></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BJ948)</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투자신탁 추가></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BJ948)</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0월 20일
1) 모투자신탁 추가(하나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신설
3)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 이상 투자 문구 삭제)</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다.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추가)</td><td>다.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tr><td>하나 UBS FirstClas</td><td>주요투자대상</td><td>국내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s 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투자목적</td><td>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 추구합니다.</td></tr>
<tr><td></td><td>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td><td>-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td></tr>
</table>
</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d>저평가된 우량주식 등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모투자신탁</td></tr>
<tr><td>하나 UBS 태극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40% 수준</td><td>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등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모투자신탁</td></tr>
<tr><td>하나 UBS 태극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d>배당성향이 높은 주식 등 국내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모투자신탁</td></tr>
</table>
*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
</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 rowspan="2">30% 수준</td><td>저평가된 우량주식 등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모투자신탁</td></tr>
<tr><td>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td></tr>
<tr><td>하나 UBS 태극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40% 수준</td><td>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등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모투자신탁</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
<td></td>
<td>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2) 투자제한
<모투자신탁 추가></td>
<td>
<table>
<tr><td>하나 UBS 태극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d>배당성향이 높은 주식 등 국내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모투자신탁</td></tr>
</table>
*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2) 투자제한
[별첨 1]</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
</table>
※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KOSPI*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성장모투자신탁, (생략)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주식에 주로 투자하는</td>
<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
</table>
※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KOSPI*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현행과 동일)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는</td>
</tr>
</table>

	성장모투자신탁, (생략)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 추가>	모투자신탁, (현행과 동일)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운용전략 □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추구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2)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수익률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수익률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펀드매니저와의 면담 및 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운용현황 및 전망 파악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사항		

<별첨1>

- 하나UBS 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취득 시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라.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	

	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한도초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 제5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태극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모투자신탁 추가
-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신설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 이상 투자 문구 삭제)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 10. 20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4항 <추가>	제4항 5. 하나UBS FirstClass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FirstClass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가. 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FirstClass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수준(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수준 다. 유망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수준 라. 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수준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항의 투자비율은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다.	<삭제> 1. 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수준(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5.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현행과 동일)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 39 조의 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 중 50%(연 1000분의 0.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 추가>

(2)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 90% 이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
</table>
</td><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투자목적</th></tr>
<tr><td>하나 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주요투자대상</td><td>국내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td></tr>
<tr><td></td><td>투자목적</td><td>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 추구합니다.</td></tr>
</table>
(2) 투자대상
<삭제>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
<td></td>
<td>[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추가>

(3) 비교지수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성장모투자신탁, (생략)</td>
<td>[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주식</td><td>60%이상</td></tr><tr><td>채권</td><td>40%이하</td></tr><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이하</td></tr><tr><td>어음</td><td>40%이하</td></tr></table>
(3) 비교지수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현행과 동일)</td>
</tr>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2. 투자전략
[모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table>
[모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
<추가></td>
<td>2. 투자전략
[모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table>
[모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
<table><tr><th>모투자신탁</th><th>투자전략</th></tr><tr><td>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td></tr></table></td>
</tr>
</table>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 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추구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 유망종목 발굴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투자신탁 추가></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BJ948)</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투자신탁 추가></td><td>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BJ948)</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0월 20일
1) 모투자신탁 추가(하나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신설
3)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 이상 투자 문구 삭제)</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다.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추가)</td><td>다.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tr><td>하나 UBS FirstClas</td><td>주요투자대상</td><td>국내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s 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투자목적</td><td>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 추구합니다.</td></tr>
<tr><td></td><td>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td><td>-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td></tr>
</table>
</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모투자신탁 수익증권</td><td>90% 이상</td><td>태극성장모투자신탁, 블루칩모투자신탁, 배당모투자신</td></tr>
<tr><td>하나 UBS 태극성장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d>저평가된 우량주식 등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모투자신탁</td></tr>
<tr><td>하나 UBS 태극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d>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등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모투자신탁</td></tr>
<tr><td>하나 UBS 태극배당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10% 수준</td><td>배당성향이 높은 주식 등 국내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모투자신탁</td></tr>
</table>
</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태극성장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 rowspan="2">30% 수준</td><td>저평가된 우량주식 등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모투자신탁</td></tr>
<tr><td>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td></tr>
<tr><td>하나 UBS 태극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d>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등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모투자신탁</td></tr>
<tr><td>하나 UBS 태극배당 증권</td><td>10% 수준</td><td>배당성향이 높은 주식 등 국내주식에 투자신</td></tr>
</table>
</td></tr>
</table>

	하나 UBS 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0% 수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우량중소형 주식 등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

*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2) 투자제한

<모투자신탁 추가>

모투자신탁[주식]		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모투자신탁
하나 UBS 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0% 수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우량중소형 주식 등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

*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2) 투자제한

[별첨 1]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30% 수준

※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KOSPI*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성장모투자신탁,(생략)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 추가>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태극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30% 수준

※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KOSPI*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현행과 동일)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증권모

		투자신탁[주식] 가.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운용전략 □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추구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2)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수익률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수익률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펀드매니저와의 면담 및 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운용현황 및 전망 파악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별첨1>

- 하나UBS 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취득 시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바.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한도초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 제5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변경전) 하나UBS 파워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변경후) 하나UBS 파워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1)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2) 모투자신탁 추가
3)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4) 펀드명 변경
5)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추가
6) 비교지수 변경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10월 20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조 (용어의 정의)	<신설>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파워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혼합채권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파워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혼합채권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6. 모자형(자투자신탁) <삭제>

	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파워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3.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신설>	⑤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내지 제4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포함한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이하 "채권"이라 한다) 3.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이라 한다) 4.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5. 금리스왑거래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매(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9. 증권의 차입	

	10.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3.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사모사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삭제>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4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본문, 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삭제>
	③제19조제2호 본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삭제>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25 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26 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 35 조(상환금등의 지급)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7 조(수익자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신설>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⑪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9 조의 2(모투자신탁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

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 중 50%(연 1000분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파워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하나UBS 파워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전자단기사채 포함)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주식(공모주)에 20%이하를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혼합채권형)입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분류** <추가>	**분류** 모자형

<table>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전자단기사채 포함)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주식(공모주)에 20%이하를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 (혼합채권형)입니다.

• 비교지수 : KOSPI 10% + KIS채권평가 CD지수 9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집합투자재산의 2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신설>
</td>
<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비교지수 :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92.5% + 코스피 7.5%
주1) 이 비교지수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70% 이상</td></tr>
<tr><td>하나 UBS 파워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하나 UBS 공모주&지배구조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td><td>30% 이하</td></tr>
<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
<td></td>
<td></td>
<td>[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채권</td><td>60% 이상</td></tr><tr><td>어음</td><td>40% 이하</td></tr><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table>
- 하나 UBS 파워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채권</td><td>60% 이상</td></tr><tr><td>주식</td><td>20% 이하</td></tr><tr><td>어음</td><td>40% 이하</td></tr></table>
-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채권</td><td>60% 이상</td></tr><tr><td>주식</td><td>30% 이하</td></tr><tr><td>어음</td><td>40% 이하</td></tr><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table></td>
</tr>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2. 투자전략
<별첨 1 참조 ></td>
<td>2. 투자전략
<별첨 1 참조 ></td>
</tr>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2) 비교지수: KOSPI 10% + KIS채권평가 CD지수 90%
이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9.5%)+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년구간) 30% + 회사채(1-3년구간) 55% + BB급(3월-1년) 15%]*90.5%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td>
<td>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2) 비교지수 :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92.5% + 코스피 7.5%
이 비교지수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설정일부터 2017년 01월 19일까지 (KOSPI*9.5%)+ [KBP 종합채권지</td>
</tr>
</table>

	다.	수 중 국채(1-3년구간) 30% + 회사채(1-3년구간) 55% + BB급(3월-1년) 15%]*90.5%, 2017년 1월 20일부터 2017년 10월 19일까지 KOSPI 10% + KIS채권평가 CD지수 9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3.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관리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3.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에서 위험 관리전략을 수행합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파워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파워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파워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파워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 년 10 월 20 일 1)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2) 모투자신탁 추가 3)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4) 펀드명 변경 5)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추가 6) 비교지수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혼합채권형)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다. <신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혼합채권형)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table>
<tr><td></td><td><신설></td><td>같습니다.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70% 이상</td></tr><tr><td>하나 UBS 파워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하나 UBS 공모주&지배구조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td><td>30% 이하</td></tr><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별첨 2 참조 ></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전자단기사채 포함)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주식(공모주 포함)에 20%이하를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td><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별첨 3 참조></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별첨 3 참조></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신설></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별첨 4></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td><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td></tr>
</table>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전자단기사채 포함)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주식(공모주 포함)에 20%이하를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1) 운용전략 1) 고객 Needs 에 부합한 안정적 운용성과 추구 - 정기예금이율 + "Alpha" 수익 목표 - 절대수익추구를 위해 우량 회사채, 전자단기사채 및 및 기업어음에 집중투자 - Medium Risk Taking 전략구사 -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최소화 추구 - 저등급 회사채의 경우 유동성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만기 선택 2) 안정적인 이자수익(Income Gain) 확보 추구 - Credit Research 를 바탕으로 저평가 자산 발굴에 중점 - 전략적 투자의사 결정을 통한 포트폴리오 운용 (등급별/섹터별/업종별 분석 의견, 투자의사 결정) 3) Enhancement 전략을 통한 + "Alpha"수익 창출 추구 - 동일등급 내 종목별 금리편차를 활용 저평가 기회 탐색 4) 업종대표주, 고배당주, 실적개선기대 및 저평가주, 공모주에 투자	-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투자대상** / **투자비율**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 70% 이상 하나 UBS 파워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하나 UBS 공모주&지배구조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30% 이하 유동성자산 / 10% 이하 ※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92.5% + 코스피 7.5%** 주1) 이 비교지수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5) Portfolio 전략 6) 비교지수 (Benchmark) : KOSPI 10% + KIS 채권평가 CD 지수 90% -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집합투자재산의 2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주 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 년 1 월 20 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공모주)에 20%이하를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신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에서 위험 관리전략을 수행합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별첨 5 참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추가> 나. 환매 <추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생략)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주1) 비교지수: **(KOSPI*10%)+(KIS채권평가CD지수*90%)** - 이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9.5%)+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년구간) 30% + 회사채(1-3년구간) 55% + BB급(3월-1년) 15%]*90.5%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주1) 비교지수 :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92.5% + 코스피 7.5%** 이 비교지수는 2017 년 10 월 20 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설정일부터 2017 년 01 월 19 일까지 (KOSPI*9.5%)+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 년구간) 30% + 회사채(1-3 년구간) 55% + BB 급(3 월-1 년) 15%]*90.5%, 2017 년 1 월 19 일부터 2017 년 10 월 19 일까지 KOSPI 10% + KIS 채권평가 CD 지수 9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또는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

		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생략, 현행과 동일)

별첨 1

<변경 전>

■ 고객 Needs에 부합한 안정적 운용성과 추구
- 정기예금이율 + "Alpha" 수익 목표
- 절대수익추구를 위해 우량 회사채, 전자단기사채 및 기업어음에 집중투자
- Medium Risk Taking 전략구사
-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최소화 추구
- 저등급 회사채의 경우 유동성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만기 선택

■ 안정적인 이자수익(Income Gain) 확보 추구
- Credit Research를 바탕으로 저평가 자산 발굴에 중점
- 전략적 투자의사 결정을 통한 포트폴리오 운용(등급별/섹터별/업종별 분석 의견, 투자의사 결정)

■ Enhancement 전략을 통한 + "Alpha"수익 창출 추구
- 동일등급 내 종목별 금리편차를 활용 저평가 기회 탐색

■ Portfolio 전략

Concept	Low Risk / Medium Return 추구
	주식투자를 통한 추가 수익 추구
자산배분	A급 이상 우량 채권, 전자단기사채 및 기업어음에 60% 이상 투자
	주식(공모주 포함) 20% 이하 투자
만기구조	Duration 0.2년 ~ 0.5년 투자전략

<변경 후>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1)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 기본 Fund Duration : 1 년이상 관리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에 대한 Duration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 유동자산 편입비는 5%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 자산구성 전략
- 기본 Portfolio를 유지하되 금리상황에 따라 만기조정
- Dealing Position: 펀드자산의 일정부분을 국고, 통안, 정부보증 특수채 등 활용
- Spread 거래 / Arbitrage 거래: 펀드자산의 10% 이내 수준에서 현선물 등을 활용 초과수익 추구

(2) 하나UBS 파워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고객 Needs에 부합한 안정적 운용성과 추구
- 정기예금이율 + "Alpha" 수익 목표
- 절대수익추구를 위해 우량 회사채, 전자단기사채 및 기업어음에 집중투자
- Medium Risk Taking 전략구사
-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최소화 추구
- 저등급 회사채의 경우 유동성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만기 선택

■ 안정적인 이자수익(Income Gain) 확보 추구
- Credit Research를 바탕으로 저평가 자산 발굴에 중점
- 전략적 투자의사 결정을 통한 포트폴리오 운용(등급별/섹터별/업종별 분석 의견, 투자의사 결정)

■ Enhancement 전략을 통한 + "Alpha"수익 창출 추구
- 동일등급 내 종목별 금리편차를 활용 저평가 기회 탐색

(3)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1) 채권부문

- **국공채, 통안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채권수익을 추구합니다.**

■ 채권 A-이상, 어음 A2-이상의 국공채, 통안채, 은행채 중심의 우량채권에 투자

■ 기본 포트폴리오는 운용목표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구성

■ 기본 포트폴리오 구축 후, 금리 변동성을 활용한 방향성(듀레이션) 전략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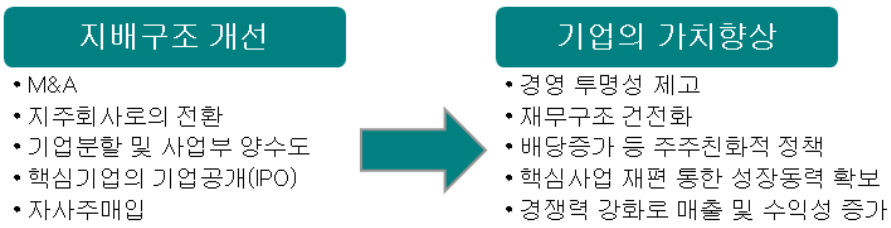
■ 추가수익 기회 탐색으로 상대가치 매매 (Relative Value Trading) 전략 병행 시행

2) 주식부문

- 공모주 (IPO) : 전문가에 의한 기업가치 분석을 통한 안정적 성과를 추구합니다.

핵 심 전 략	세 부 내 용
우량기업 선정 & 가치분석	• 공모대상 분석기업의 펀더멘탈 및 기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요인 분석 • 가치분석 및 공모가의 적정성 분석
적정 물량 확보	• 펀더멘탈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공모 참여가격 선정 • 수급상황 및 주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모 참여 조건 결정(보유 의무기간 설정 등)
매도 타이밍 포착	• 가능한 한 상장초기에 매도 추진 • 적정가격 대비 차이가 많이 나거나 향후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장기보유를 통한 이익 추구

- 지배구조개선기업+우량가치주 : 지배구조 개선으로 가치향상에 따른 자본차익을 추구합니다.



별첨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주요투자대상	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
	투자목적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
하나 UBS 파워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주요투자대상	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
	투자목적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전자단기사채 포함)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주식(공모주 포함)에 20%이하를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
하나 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주요투자대상	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 주식 30% 이하
	투자목적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이자 수익을 추구하며, 신탁자산의 30%이하를 공모주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주식, 우량가치주 등에 투자하여 수익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며, 신탁자산의 30%이하를 공모주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주식, 우량가치주 등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별첨 3

<변경 전>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20%이하**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2.채권	**60% 이상** **사모사채권 : 5%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포함한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취득시 신용 평가 등급이 A2-이상인 것)_
3.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4.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6.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7.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적용예외)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채권, 어음의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집합투자증권등, 투자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변경 후>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70% 이상
하나 UBS 파워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하나 UBS 공모주&지배구조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30% 이하
유동성자산	10% 이하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별첨 4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채권	**60%이상**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평가등급이 편입일 기준 최상위등급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함) 단, 잔존만기 1 년이상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함.
2.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편입일기준으로 최상위등급이어야 함)
4.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6.집합투자증권 등	5%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7.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라.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하나 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채권	60%이상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함)
2.주식	30%이하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 함)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5.주식및채권관련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	

장내파생상품	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 이하까지 투자 - 투자목적 : 위험회피 목적에 한함	
6.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 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1. 주식, 장내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포함)에의 투자는 제 2 호의 주식투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7.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바.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하나UBS파워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20%이하**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2.채권	**60% 이상** **사모사채권 : 5%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포함한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취득시 신용 평가 등급이 A2-이상인 것)_
3.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4.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6.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7.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아.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본문만 해당)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증권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	

	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하나UBS파워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및 환매 조건부매수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 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지분 증권 투자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	

발행 주식 투자	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별첨 5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 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합니다.

■ 기본 Fund Duration : 1 년이상 관리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에 대한 Duration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 유동자산 편입비는 5%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 자산구성 전략

- 기본 Portfolio를 유지하되 금리상황에 따라 만기조정
- Dealing Position: 펀드자산의 일정부분을 국고, 통안, 정부보증 특수채 등 활용
- Spread 거래 / Arbitrage 거래: 펀드자산의 10% 이내 수준에서 현선물 등을 활용 초과수익 추구

■ 비교지수(Benchmark)

: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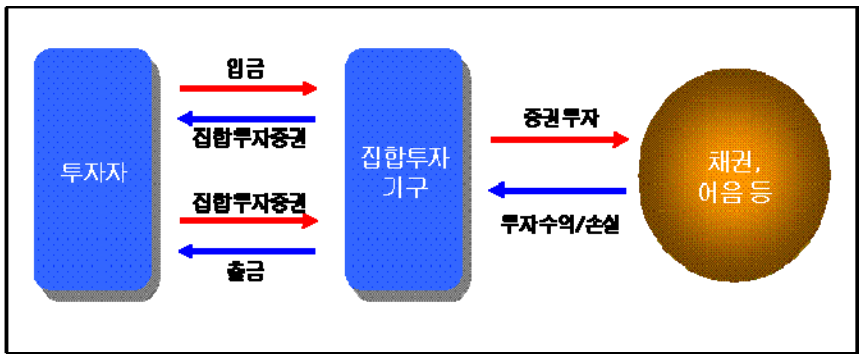
나. 위험관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국공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 및 어음 등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 **하나UBS 파워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전자단기사채 포함)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주식(공모주 포함)에 20%이하를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 고객 Needs에 부합한 안정적 운용성과 추구
- 정기예금이율 + "Alpha" 수익 목표
- 절대수익추구를 위해 우량 회사채, 전자단기사채 및 기업어음에 집중투자
- Medium Risk Taking 전략구사
-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최소화 추구
- 저등급 회사채의 경우 유동성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만기 선택

■ 안정적인 이자수익(Income Gain) 확보 추구
- Credit Research를 바탕으로 저평가 자산 발굴에 중점
- 전략적 투자의사 결정을 통한 포트폴리오 운용(등급별/섹터별/업종별 분석 의견, 투자의사 결정)

■ Enhancement 전략을 통한 + "Alpha"수익 창출 추구
- 동일등급 내 종목별 금리편차를 활용 저평가 기회 탐색

■ Portfolio 전략



■ 비교지수 (Benchmark) : **KOSPI 10% + KIS 채권평가 CD 지수 90%**

-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집합투자재산의 2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공모주)에 20%이하를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가. 투자전략

(1) 운용전략

1) 채권부문

- **국공채, 통안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채권수익을 추구합니다.**

■ 채권 A-이상, 어음 A2-이상의 국공채, 통안채, 은행채 중심의 우량채권에 투자

■ 기본 포트폴리오는 운용목표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구성

■ 기본 포트폴리오 구축 후, 금리 변동성을 활용한 방향성(듀레이션) 전략 시행

■ 추가수익 기회 탐색으로 상대가치 매매 (Relative Value Trading) 전략 병행 시행

2) 주식부문

- 공모주 (IPO) : 전문가에 의한 기업가치 분석을 통한 안정적 성과를 추구합니다.

■ 우량 기업의 신규 IPO 참여

■ 지배구조 재편 과정의 IPO 참여

핵심전략	세부내용
우량기업 선정 & 가치분석	• 공모대상 분석기업의 펀더멘탈 및 기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요인 분석 • 가치분석 및 공모가의 적정성 분석
적정 물량 확보	• 펀더멘탈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공모 참여가격 선정 • 수급상황 및 주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모 참여 조건 결정(보유 의무기간 설정 등)
매도 타이밍 포착	• 가능한 한 상장초기에 매도 추진 • 적정가격 대비 차이가 많이 나거나 향후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장기보유를 통한 이익 추구

- 지배구조개선기업+우량가치주 : 지배구조 개선으로 가치향상에 따른 자본차익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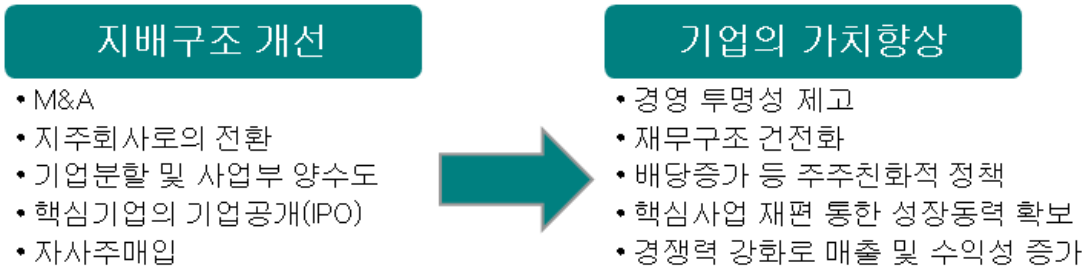
■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선기업

■ 계열사 구조조정, M&A, 사업부 재편, 신규상장 등을 통해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향상이 예상되는 기업 등

■ 현금흐름과 배당이 안정적인 지주회사

■ 우량 계열사 지분을 가진 실질적 지주회사

■ 저평가된 우량 가치주를 유니버스에 포함하여 투자유연성과 성과 제고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비교지수(Benchmark) : **(KOSPI*25%)+(매경BP국공채1~2년지수*70%)+(Call금리×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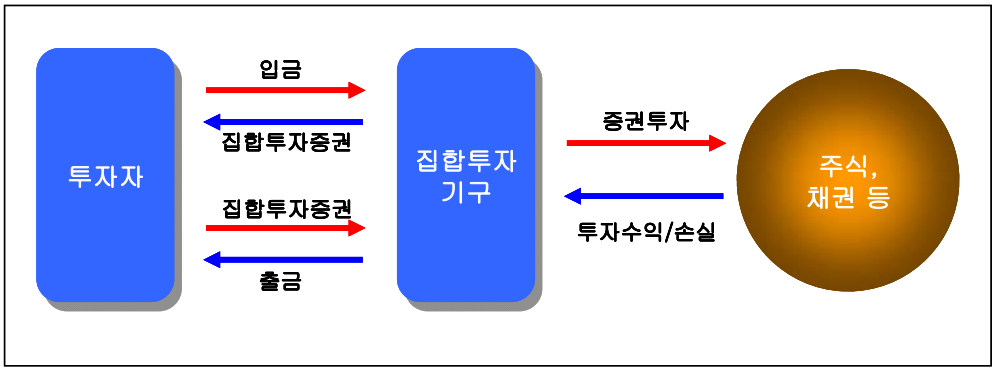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신탁재산의 30%이하 및 채권에 60%이상을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OSPI*25%)+(매경BP국공채1~2년지수*70%)+(Call금리×5%)]**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축소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합니다. 또한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 이외에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혼합채권형)으로서 이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 주요 변경내용: 자투자신탁 추가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10.20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가>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하나UBS파워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자투자신탁 추가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10.20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가>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하나UBS파워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First Class 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자투자신탁 추가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10.20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First Class에이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하나UBS Big&Style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3. 하나UBS 태극건증권자투자신탁[주식] <추가>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First Class에이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하나UBS Big&Style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3. 하나UBS 태극건증권자투자신탁[주식] 4. 하나UBS 태극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5. 하나UBS 태극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덱스플러스액티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